

NH-CA 아이사랑 적립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신탁계약서 정오표														
조항	변경전	변경후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48859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14238, Class A- 14239, Class C- 48859, Class Ce- 14240												
제2조(용어의 정의)	-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p>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li> <li>2. 증권형(주식형)</li> <li>3. 개방형</li> <li>4. 추가형</li> </ol>	<p>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li> <li>2. 증권형(주식형)</li> <li>3. 개방형</li> <li>4. 추가형</li> <li>5. 종류형</li> </ol> <p>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lt;신설&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입제한</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Class A</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한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고, 환매수수료 징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Class C</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한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고, 환매수수료 징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Class Ce</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터넷 전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고, 환매수수료 징구</td> </tr> </tbody> </table>	종류	가입제한	기타	Class A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고, 환매수수료 징구	Class C	제한없음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고, 환매수수료 징구	Class Ce	인터넷 전용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고, 환매수수료 징구
종류	가입제한	기타												
Class A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고, 환매수수료 징구												
Class C	제한없음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고, 환매수수료 징구												
Class Ce	인터넷 전용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고, 환매수수료 징구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 조좌로 한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a href="#">수종의</a>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 조좌로 한다.												

<p><b>제7조(추가신탁)</b></p>	<p>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u>수종의</u>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8조(신탁금의 납입)</b></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u>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u>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u>당해 종류</u>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p><b>제9조(수익권의 분할)</b></p>	<p>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p> <p>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p>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u>수익증권의 종류별로</u>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종의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p> <p>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u>수익증권의 종류별로</u>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p><b>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b></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p>

	<p>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여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u>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Class A 수익증권</u></li> <li>2. <u>Class C 수익증권</u></li> <li>3. <u>Class Ce 수익증권</u></li> </ol> <p>⑤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p><b>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b></p>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u>종류 및</u>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25조(판매가격)</b></p>	<p>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u>15시</u>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u> 기준가격(<u>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 30 조제 3 항을 준용한다</u>)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u>15시</u>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p>

		<p>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b>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b>(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 제3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p>
<p><b>제27조(환매가격)</b></p>	<p>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b>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b>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b>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b>에 공고되는 <b>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b>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b>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b></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b>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b>]을 산정한다. 기준가격[<b>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b>]은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b>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b>]에서 부채총액[<b>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b>]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b>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b>]"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b>당해 종류 수익증권</b>]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가격 <u>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을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p>

		<p>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한다.</p> <p><u>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u></p>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p><u>③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u></p>
제33조(이익분배)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u>당해 종류 수익증권</u> 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p>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채투자)	<p>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p> <p>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 10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u>종류</u>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p> <p>② 이익분배금으로 <u>당해 종류</u>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 10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제37조(수익자총회)	<p>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p>	<p>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p>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은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 3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은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⑥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p>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⑧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 5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 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p>	<p>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 3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⑨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 5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 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p> <p><u>⑩ 본 조의 수익자 총회는 제 8 항 및 제 9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수”로 본다.</u></p>
제39조(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 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6.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4.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7)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 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Class A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6.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7)

2. Class C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6.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4.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7)

		<p>3. Class Ce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6.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1.2)</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7)</p>
<p><b>제40조(판매수수료)</b></p>	<p>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p>	<p><u>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u></p> <p><u>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의 100 분의 5 의 범위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u></p> <p><u>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에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Class A : 선취판매수수료로써 납입금액의 1%</u></li> <li>2. <u>Class C : 해당사항 없음</u></li> <li>3. <u>Class Ce : 해당사항 없음</u></li> </ol>
<p><b>제41조(환매수수료)</b></p>	<p>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b>제 41 조(환매수수료)</b> 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u>당해 종류 수익증권</u>을 보유한 기간(<u>당해 종류 수익증권</u>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u>당해 종류 기준가격</u>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p>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p>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p> <p>② 제 1 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li> <li>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li> <li>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li> <li>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li> <li>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li> <li>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li> <li>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li> <li>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li> <li>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관리비용</li> </ol>	<p>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u>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u></p> <p>② 제 1 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li> <li>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li> <li>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li> <li>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li> <li>5. <u>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u> 수익자총회 관련비용</li> <li>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li> <li>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li> <li>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li> <li>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관리비용</li> </ol> <p><u>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u></li> </ol>